

2025-1차

## “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”

「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」(이하: 운영규정) 제20조에 따라 “2025-1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3. 6.  
방위사업청장

### I

#### 사업목적

-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구 개발,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, 시중 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방위사업청에서 지원

### II

#### 융자추천 규모 및 시기

- 융자추천 규모 (동일 사업(과제)에 대해 자금 간 중복신청 불가)

- 방산육성자금 융자추천 : 약 1,000억 원
  -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추천 : 약 2,500억 원

\* 상기 전체 융자규모는 신청결과 등의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\*\* 방위사업청의 ‘융자추천’이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융자 가능금액이 변동되거나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

- 대출 시기 : 방위사업청의 융자추천\* 이후 ~ ’25년 12월 31일까지

\* 추천 일정 : '25. 4월(예정)

### III

## 공통사항 (대출기간·금리, 신청기한 등)

### 1. 분야별 대출기간

구 분	분 야	거치기간	총 대출기간 (거치기간 포함)
방산육성 자금	연구개발/핵심기술/국산화 등	2년 이내	5년 이내
	원자재 비축		
	방산시설 설치 등	5년 이내	13년 이내
	방산업체 운영		
	유류시설 유지	2년 이내	7년 이내
	방산물자 등의 수출	-	최종 수출대금 결제 기일 이후 6개월 가산 기간 이내
국방 중소기업 정책 자금	연구개발	2년 이내	5년 이내
	시설의 설치 등	3년 이내	10년 이내
	국방중소기업 운영		
	계약업체 생산	-	5년 이내

※ 업체별 대출한도액 : 업체는 은행의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 100% 신청 후 방위사업청에서 지원타당성을 판단하여 감액할 수 있음

### 2. 대출 금리

업체별	정부 지원 금리	업체 부담 금리
대기업 및 중견기업	1.5%	대출금리 <sup>2)</sup> - 1.5%p
중소기업 <sup>1)</sup>	3.0%	대출금리 <sup>2)</sup> - 3.0%p

※ 업체의 부담금리는 0.5% 보다 낮아질 수 없음

- 1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 포함
- 2) 업체에 대한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결과 정해지는 금리

### 3. 신청 기한

'25. 3. 6.(목) ~ 3. 28.(금) 18:00까지 신청

- ※ “방산육성자금”과 “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” 응자 신청 시 지원요건 및 응자기준에 따라 구분 신청, 동일 사업(과제)에 대해 자금간 중복신청 불가
- ※ 타 부처의 응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 중복신청 불가
- ※ 연내 대출 및 자금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

## 4. 신청 방법

-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([www.d4b.go.kr](http://www.d4b.go.kr))<sup>\*</sup>에서 신청(회원가입 필요)

\* 민원신청>방위산업이차보전>방위산업 육성자금 신청 또는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

\* 시스템에 한글/엑셀본 첨부 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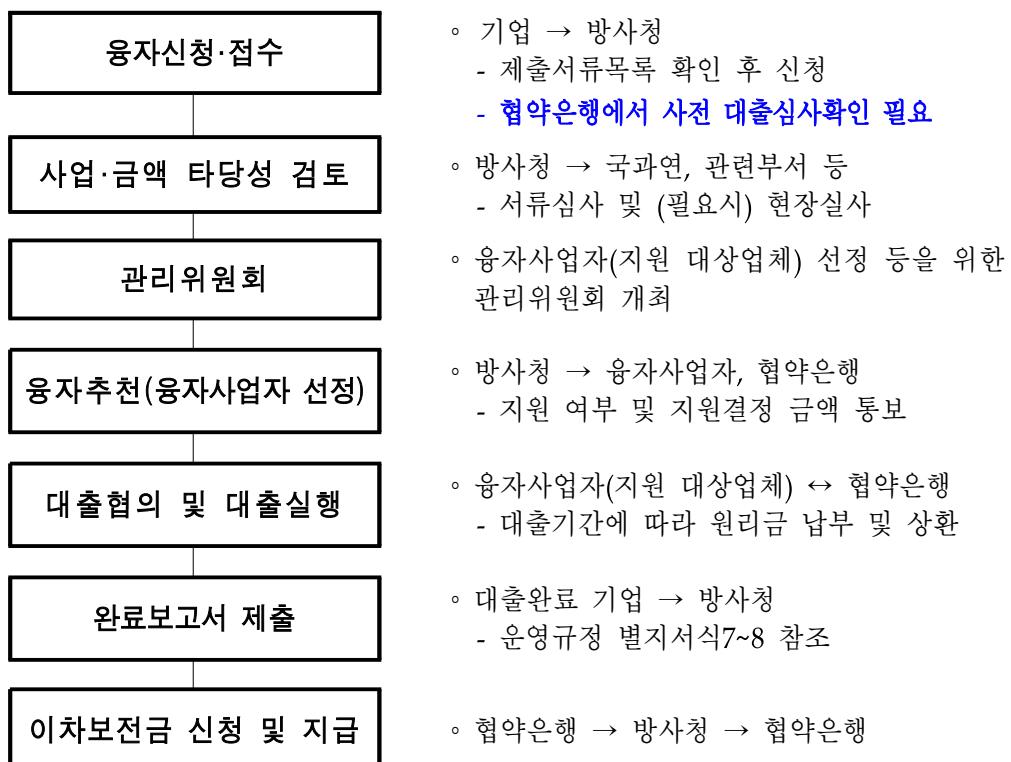
- 사업 담당자 연락처 (방위사업청 방위산업 금융지원TF)

- 주무관 김효준(☎ 02-2079-6453), [sun4shine@korea.kr](mailto:sun4shine@korea.kr)

## 5. 대출취급 은행

-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BNK경남은행, BNK부산은행,  
DGB대구은행, IBK기업은행, KB국민은행, KDB산업은행, NH농협은행

## 6. 진행 절차



## 1. 융자 대상 사업

### 1 연구개발,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, 국산화개발 사업

- 아래의 개발사업 중 업체부담 소요자금을 지원대상으로 함

사 업	세부내용
연구개발	「방위사업관리규정」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및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내연구개발소요에 해당하는 부분
	방사청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포함하여 개발중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
	방산업체의 자체투자 연구개발사업
	「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」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
	「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 제3조제1항의 제1호 가, 나, 라 및 제2호 가, 나의 사업
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	「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 운영규정」 제4장제2절에 따라 선정된 사업
	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업체로 선정된 과제
	체계부품국산화 승인품목
	일반부품국산화 승인품목
	핵심부품국산화 승인품목
국산화개발	수출연계국산화 승인품목
	전략부품국산화 승인품목
	운용유지 및 정비능력개발의 부품, 시험·검사장비 등 국산화 승인품목
	기타 군수품 국산화 관련 승인품목
	*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별도 예산 운영되므로 자금지원 제외

\* 사업추진계획 및 개발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

\* **일반업체, 방산업체 모두 신청 가능**

## 2 원자재 비축 사업 (방산업체만)

-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은 「방위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5조 및 「방산 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」에 따른다

## 3 방산 유휴시설 유지 (방산업체만)

- 방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시설<sup>\*</sup>(기계장치, 치공구, 계측기, 금형, 건물 및 구축물 포함)을 지원하며, 방산/민수 겸용 또는 민수 전환가능 생산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\* 유휴시설: 전시 동원계획 임무고지 품목 및 방산물자 생산시설로서 자금신청 연도 기준 가동중단 또는 가동률 40% 이하인 시설

## 4 방산물자 등 수출

- 「방위사업법」 제57조에 따라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,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(재료비, 노무비, 경비) 한도 내에서 지원
- 해당 계약 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수출금융자지원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, 선급금 등 既 지원받은 금액은 지원 제외

## 5 방산시설 설치 등 (방산업체만)

- 「방위사업법」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에 활용(시험측정, 검사, 교정 포함)되는 시설(기계장치, 치공구, 계측기, 금형, 건물 및 구조물 포함)

### <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>

- 건축비 : 건축허가(신고)를 받은 경우
- 사업장 매입(경·공매 포함) 또는 임차비(보증금 및 차임)
- 토지구입비 : 건축허가가 확정되었거나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·제7조·제7조의2·제8조에 따라 지정·개발된 국가산업/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, 농공단지의 입주계약이 체결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
- 그 밖에 방산물자 생산에 활용되는 건물 및 구조물의 설치비 및 임차료

## 6 방산업체 운영 (방산업체만)

-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보안요건\* 구비·유지 비용
  - \* 방산시설, 방산업체 종사인원, 비밀문서 취급, 방산물자 및 원자재 보호, 장비 및 설비, 통신시설·수단, 정보처리 등에 관한 보안대책(방위사업법 시행령 참조)
-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군용총포 등의 허가요건\* 구비·유지비
  - \* 군용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허가를 위한 안전성 확보
-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·수리·이전 비용
-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 및 방호(防護)장치 및 보호구(保護具) 등의 안정성 평가 및 개선 비용
- 제품설계·생산공정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스마트공장 관련 SW, 기계장치 구입비
- 군수품 생산에 활용하는 금형, 기계장치 보관을 위한 시설의 설치, 수리, 이전비 및 임차료

## 2. 용자 대상업체 및 기준

### 1 용자 대상업체(지원요건) (대·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포함)

- ① 연구개발,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,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업체
- ②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
  - \* ①, ② :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업체도 지원 가능
- ③ 방산시설의 설치·이전·개체·보완·확장을 위한 자금 또는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보안, 안전 관련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
- ④ 원자재의 구매·비축, 방산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

### 2 용자 소요자금 인정기간

- '25. 1. 1. ~ 12. 31.(12개월) 기간 중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집행 및 기성이 확인되는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함

### 3. 우선 지원사항

-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
- 「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동 사업자금 지원범위 내의 우선 지원
- 부품국산화 품목 중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에 포함된 품목을 개발하는 업체
- 연구개발,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사업 참여업체
-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
- 방산업체 운영자금 또는 방산시설자금을 신청한 중소 방산업체

### 4. 제출서류

구 분	제출서류 목록	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① 방산육성자금 소요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</li><li>② 자금 세부내역서(Excel파일)(별지 제1호의1서식), 기타 증빙자료* * 기타 증빙자료: 구매 증빙자료(견적서, 발주서, 거래명세서 등), 사업 관련 계약서,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(인건비), 수출자금 선금수령내역, 건축허가서 등</li><li>③ 사업계획서(별지 제1호의2서식)</li><li>④ 확약서(별지 제3호서식)</li><li>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4호서식)</li><li>⑥ 자금집행계획서(별지 제5호서식)</li><li>⑦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<a href="http://smiinfo.mss.go.kr">http://smiinfo.mss.go.kr</a>) 또는 중견기업정보마당(<a href="https://www.mme.or.kr">https://www.mme.or.kr</a>)을 이용하여 제출</li><li>⑧ 협약은행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(별첨 5)</li><li>⑨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(포괄손익계산서 포함)</li><li>⑩ (해당사항 있는 기업의 경우) 고용창출 금리우대 신청서[별첨3]</li></ul>	
연구개발· 핵심기술· 국산화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① 독립된 연구소(부서) 증빙자료</li><li>② 연구인력 증빙자료</li><li>③ 연구실적 증빙자료</li><li>④ 방산육성 지원사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, 국산화 등 보조금 대상 사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 내용 및 상환 계획</li></ul>	
방산시설 / 방산업체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① '건축허가서' 또는 '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입주계약서'(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신청 시)</li></ul>	
수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① 수출사업 관련 계약서</li><li>② 선금 수령내역 등</li></ul>	

\* 유류시설 및 원자재 비축은 관련 정부기관 검토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, 신청 전 융자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융자 대상 사업

### 1 연구개발

- 군수품 개발을 위한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 사업으로 한정함
  - \* 체계업체로부터 수주한 위탁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은 방산육성자금의 연구개발자금 항목으로 신청 바랍니다.
- 정부투자, 공동투자 사업은 제외, 방산업체 제외

### 2 군수품 생산시설 설치 등

-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·이전·개체·보완·화장에 필요한 자금 (건물 및 구조물 포함)
- 지원 비목: 기계장치구입비, 시험장비비, 금형비, 치공구비,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\*, 시설이전비, 시설복구비

<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>

- 건축비 : 건축허가(신고)를 받은 경우
- 사업장 매입(경·공매 포함) 또는 임차비(보증금 및 차임)
- 토지구입비 : 건축허가가 확정되었거나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·제7조·제7조의2·제8조에 따라 지정·개발된 국가산업/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, 농공단지의 입주계약이 체결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
- 그 밖에 군수품 생산에 활용되는 건물 및 구조물의 설치비 및 임차료

### 3 계약업체 생산

- 청,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
- '위의 업체' 또는 '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'\*와 계약을 맺은 제1차, 제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
  - \* 사전품질보증 승인업체가 추천회계연도 내에 청과 계약을 체결 못한 경우에는, 융자 지원대상(협력업체)은 다음연도 3.31.까지 취급은행에 융자원금을 상환하여야 함
- 지원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계약 건에 대해 계약금, 선급금 등 既 지급받은 금액은 지원 제외

## 4 국방 중소기업 운영

-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보안요건\* 구비·유지 비용
  - \* 방산시설, 비밀문서 취급, 방산물자 및 원자재 보호, 장비 및 설비, 통신시설·통신 수단, 정보처리 등에 관한 보안대책 (방위사업법 시행령 참조)
-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군용총포 등의 허가요건\* 구비·유지비
  - \* 군용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허가를 위한 안전성 확보
- 군수품 생산 등과 관련된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·수리·이전 비용
- 군수품 생산 등과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 및 방호 (防護) 장치 및 보호구(保護具) 등의 안정성 평가 및 개선 비용
- 제품설계·생산공정개선 등을 위한 IoT등 스마트공장 관련 SW, 기계장치구입비

## 2. 용자 대상업체 및 기준

### 1 용자 대상업체(지원요건)

\*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만 신청

- ①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업체
  - ②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·이전·개체·확장 자금이 필요한 업체
  - ③ 청,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
  - ④ '③의 업체(체계업체 등)' 또는 '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'와 계약을 맺은 제1차, 제2차 협력업체
  - ⑤ 군수품 생산을 위해 보안, 안전 관련 자금 및 스마트 공장 관련 SW, 기계장치 구입자금이 필요한 국방 중소기업
- \* ②,⑤ : 최근 3년간 군수품매출액 비중이 5% 이상인 업체(회사설립 3년미만시 설립 후 기간 단, 국방벤처협약기업 및 방산혁신기업100 선정기업의 경우 5% 미만이어도 지원가능)

### 2 용자 소요자금 인정기간

- '25. 1. 1. ~ 12. 31.(12개월) 기간 중 국방 중소기업의 경영을 위해 집행 및 기성이 확인되는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함

※ '자금집행계획서'상의 집행시기에 맞춰 자금대출

## 3. 우선 지원사항

- 최근 3년('24~'22년 평균) 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0% 이상인 중소기업

## 4. 제출 서류

구 분	제출서류 목록
공 통	<p>①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 신청서(별지 제2호서식)</p> <p>② 자금 세부 내역서(Excel파일)(별지 제2호의1서식), 집행대상 증빙자료*</p> <p>* 증빙자료 : 구매 증빙자료(견적서, 발주서, 거래명세서 등), 사업관련 계약서,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(인건비 신청시) 등</p> <p>③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의2서식)</p> <p>④ 확약서(별지 제3호서식)</p> <p>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4호서식)</p> <p>⑥ 자금집행계획서(별지 제5호서식)</p> <p>⑦ 중소기업 확인서 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<a href="http://sminfo.mss.go.kr">http://sminfo.mss.go.kr</a>) 이용</p> <p>⑧ 협약은행 대출심사 사전확인서(별첨 5)</p> <p>⑨ 최근 3년('24 ~ '22)간 연도별 군수품 매출비중과 계약실적을 기재한 ‘매출현황표’ 및 ‘증빙서류’(별첨2-1 군수품 매출비중 시트 참조)</p> <p>* 매출액 확인용 재무제표(손익계산서 포함), 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</p> <p>⑩ (해당사항 있는 경우) 고용창출 금리우대 신청서[별첨3]</p> <p>⑪ (해당사항 있는 경우) 국방벤처기업 협약서, 방산혁신기업100 선정 증빙서류</p>
연구개발	<p>① 독립된 연구소(부서) 증빙자료(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)</p> <p>② 연구인력 증빙자료, 연구실적 증빙자료</p> <p>③ (연구인력 인건비 신청시) 연구인력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,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</p> <p>④ (기계장치 구입비, 시험장비비 등 신청시) 계약서 또는 견적서</p>
시설 설치 / 국방중소기업 운영	<p>① ‘건축허가서’ 또는 ‘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입주계약서’ 또는 ‘매매계약서’ 등</p> <p>* ‘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’ 신청시 제출</p> <p>② (기계장치 구입비 등 신청시) 계약서 또는 견적서</p>
계약업체 생산	<p>① 사업 관련 계약서(또는 발주서)</p> <p>② 선금 수령내역</p> <p>③ (재료비 신청시) 계약서 또는 견적서</p> <p>④ (노무비 신청시)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</p>

## 1 중복 지원 제한

신청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**타부처 정책자금을 既 지원 받은 경우 신청·지원 불가**

⇒ 신청사업에 대하여 융자추천 받은 후 정부 정책자금 이중지원이 확인된 경우, 대출자금 및 기지급된 이차보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 및 지급 중단하며 차기 3회계연도 간 신규 융자추천에서 배제할 수 있음

## 2 융자사업 신청 기준

- ① 해당자금 소요신청은 추천회계연도 내에 기성이 확인될 수 있는 사업 및 품목에 한정하며, 다년간에 걸쳐 기성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 및 품목은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별로 소요신청을 하여야 함
- ② 소요신청 시 한정된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자금별, 사업별, 지원비목별 우선순위 표기하여 신청을 하여야 함
- ③ 융자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추천 회계연도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차기 2회계연도까지 융자추천에서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음  
(대출받은 자금의 집행 또한 추천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것)

## 3 융자추천 제한사항 확인

- ① 방위사업법 제59조(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)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는 자
- ② 방위사업법 제62조(벌칙)에 따라 벌칙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)에 따라 제재 중에 있는 자

## 4 대출완료 기한

✓ **기한 : 2025. 12. 31.** (타당한 사유 없이 대출기한 연장 불가능)

\* 연내 대출 및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바라며, '26년 소요금액은 '26년에 신청

## 5 목적 외 사용금지 등

- 응자사업자에게 부정청구등(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 사용, 오지급)에 따라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 
**부정이익등(부정이익과 이자)을 환수·지급중단하며, 허위·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함** ([별첨 4] 참조)
- 응자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음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해당자에 대해 차기 3회계연도 간 신규 응자추천을 제한할 수 있음

- |   |
|---|
|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 |
| ② 융자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|
| ③ 거짓(허위서류 등)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융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해당사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자금 이중지원이 확인된 경우  |
| ⑤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처분(매매, 양도, 철거, 폐기 등)한 경우            |
| ⑥ 방산물자등의 수출자금(방산육성자금) 및 계약업체 생산자금(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)의 경우, 융자금과 선금 간 중복이 확인된 경우 |

- 시설자금 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대출기간 동안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**매매, 양도,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없음**. 단,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파괴되거나 멸실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의 철거 또는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함
-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의 융자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,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「방위산업발전법」 제27조, 제28조에 따라 고발 조치함
- 응자사업자는 지급받은 대출금에 대해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

## 6 보고 의무

- 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(대출자금 사용 완료 후 2개월 이내)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 
※ 방위사업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 실시 가능
-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고정자산 대장 제출(자금 지원업체에 자금지원 기간 중 매년 1월 말까지)

\* [별첨 1] 방산육성자금 제출서식

[별첨 1-1] 방산육성자금 세부내역서 서식

[별첨 2]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출서식

[별첨 2-1]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내역서 서식

[별첨 3] 금리우대 신청 안내 및 서식

[별첨 4] 공공재정환수법 설명자료

[별첨 5] 협약은행 대출심사 사전확인서